

"서울, 새로운 탄생"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91-4 / 전송 731-679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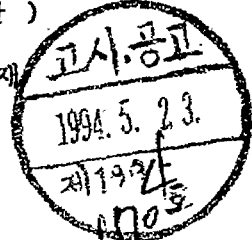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개 58413-1182

시행일자 1994. 5. 23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영 10
주택국장	전결	
주택개발과장		결재
개발2계장	[인]	1994. 5. 23
기안	김성연 [인]	주택국장
		협조

제목 전농 제5구역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적승인 및 고시

1. 건설부 고시 제376호 (93.9.21)로 구역지정된 전농 제5구역 주택개발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(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)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(권한위임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8조(고시) 및 제9조(도면의 종류) 제1항, 제4항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: 1. 고시(안) 1부.
 2. 지적현황도 1부. 끝.

원본대조필 [인]

(제2안)

수신 총무처 장관

제목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,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게재구분 : 고시
- 나. 게재건명 : 전농제5구역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적승인
- 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,

제 8조, 제9조

첨부 : 고시문 2부. 끝.

서울특별시 장

(제3안)

수신 등대문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


제목 전농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적승인 및 고시

1. 귀구관내 전농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 및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그 내용을 통보하니,
2.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보이고, 관계과에 통보하여 도시계획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기 바랍.

첨부 : 고시문 및 도면 각 3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4안)

원본대조필 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전농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적승인 및 고시 통보

1. 우리시관내 전농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및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및 도면 각 1부. 끝.


주택개량과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공원과장.

고 시 (안)

전농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적 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376호(93. 9. 21)로 구역지정된 전농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,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대문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원본대조필 

1994년 5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승인 조서

1994. 5. 23
주택국장

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비고
전농5구역	동대문구 전농동141번지일대	21,381 m ²	합동재개발

나. 도 면 :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 및 동대문구 주택과, 도시정비과
비치 도면과 같음.